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운영규정>

제정 : 2025.5.13.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은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산하에 설립하고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개발의 시장적용·확산, 기술거래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포럼은 충남 천안시에 둔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표준화 활동)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특화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포럼 운영을 통해 관련 지식의 표준개발, 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2. (정책연구) 글로벌 핵심 이슈로 대두되는 “ESG”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 대상 확산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의 포럼 수행 부가효과로, 관내 확산을 우선 도모
3. (기술거래활성화) 객관적인 ICT R&D성과(표준·특허) 평가에 대한 제도적·도구적 지원을 통해 기술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거래·기술금융 연계 활성화 추진
4. (R&D 과제수행) 포럼 협의체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기술 관련 연구 용역 및 개발 과제수행
5. 기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결과물의 귀속) 제4조에 의한 사업결과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귀속된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포럼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단체회원은 표준화 활동·정책연구 관련 기업 및 기관, 연구원(소) 등 단체 중 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개인회원은 표준화 활동·정책연구 관련 비영리단체, 학계 및 제2항에 규정된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개인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7조(가입) ① 포럼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포럼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정부 건의, 정책 및 연구 등 포럼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
2. 임원 선임권 및 임원 피 선임권
3. 포럼 주최 각종 세미나, 워크숍 개최 시 무료 또는 할인 참가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준수
2. 본 운영규정에 따른 결의사항 준수
3. 단체회원의 경우 연회비 납부

제10조(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포럼의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조직) 포럼은 총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 ①포럼은 의장 1명, 분과위원장 2명, 분과위원별 간사 2명, 담당 부처 사무관 등 10명 내외의 총회 위원을 둔다.

②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의장은 사무국 기관장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의 부재 시, 총회위원 중 임시 의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선임 의장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총회위원은 포럼 분과위원 중 활동의사를 표하거나, 포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총회위원 중에서 사무국 내부 결정을 통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③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전직·전보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되며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임원은 포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분과회원 및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총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되,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포럼표준 채택 및 표준번호 부여(별표1) 확정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추진성과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럼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 위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분과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별도의 의결기구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은 총회위원 중에서 사무국 내부 결정을 통해 위촉하며 간사 또한 동일하게 선출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소집) ①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시개최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회의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개최일 5일전까지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표준(안) 확정 및 정부 건의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의결사항과 총회에서 부여한 사업의 수행내용 및 결과를 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의 의결) ①분과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성립 및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한 회원은 참여 수에 상관없이 회원별로 1개의 의결권만 가진다.

③분과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6장 포럼 표준 제정 절차

제24조(표준화 과제제안) 포럼표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포럼의 회원과 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단체는 표준의 제정을 제안한다. 포럼표준은 표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 처리) 제안된 표준화 과제의 내용에 이해당사자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식재산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표준화 과제의 검토) ①분과위원장은 접수된 표준화 과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제24조에 의해 제안된 표준화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①분과위원장은 상정된 표준화 과제를 검토 및 심의하여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표준화 과제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 시 분과위원회 소관으로 자체 진행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표준작업으로 채택된 후, 일정기간동안 과제추진과 관련된 어떠한 표준화 활동도 없는 경우에는 표준화 과제를 폐지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시 분과위원회 소관으로 자체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초안 작성) 과제를 제안한 위원은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 초안 작성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수렴 및 검토) ①분과위원장은 과제를 제안한 위원의 초안이 작성되면 분과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의견수렴은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의견수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조정·반영한다.

제30조(포럼표준안의 채택) 분과위원회는 초안을 검토·심의한 후, 포럼표준안으로 채택한다.

제31조(포럼표준안의 보고) 분과위원장은 표준제정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정된 포럼표준안을 심의·의결하여 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표준화 중단) 분과위원장은 표준화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들과 협의한 후 표준화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공고) 표준분과위원회는 확정된 표준포럼을 30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34조(의무) ① 회원은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공고된 포럼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포럼표준이 공적표준(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35조(표준제정 세부지침) 포럼표준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관련하여서는 별첨의 기술평가표준화포럼 표준제정절차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7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의 구성) ①포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사무국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연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37조(사무국의 기능) ①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포럼의 사무 및 각종 회의의 운영지원

2. 포럼의 가입, 탈퇴 및 회원관리

3. 포럼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

4.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

5.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

②사무국은 포럼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재 정

제38조(운영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2. 포럼 자체의 사업추진에 의한 수익금

3. 외부로부터의 용역수탁 대금 등

제39조(회비) 포럼은 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등을 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해산) ①포럼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2조(운영세칙) 회원가입,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정식 시행한다.

제2조(포럼 최초 조직 및 임원) 포럼 초대 총회위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별표 1>

< 포럼표준 번호체계 >

ESG TVS	-		-					-			-	R		-	V		.		(						)
포럼명 - 분과번호 - 연도 - 표준번호 - 개정번호 - 버전번호 - (날짜: YYMMDD)																									
* 포럼명 :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 분과번호 : 1-표준분과																									
(예) ESGTVS-1-20XX-01-R1-V1.0(XXMMDD)																									